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22

발의연월일: 2020. 7. 2.

발 의 자: 송옥주·유동수·임종성

박용진 · 안호영 · 정춘숙

김영주 · 서삼석 · 박찬대

황운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 중 91% 정도는 자동차등과의 충돌사고로서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할 안전조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 임.

현행법에서도 자전거 운전자 보호를 위하여 인명보호 장구 및 발광장치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.

이에 자전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후사경(後寫鏡)을 설치하도록 하고, 자전거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 및 발광장치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제11항, 제160조제2항제3호의2·제3호의3·제3호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⑩ 자전거의 운전자는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후사경(後寫鏡)이 설치된 자전거를 운전하여야 한다.
- 제160조제2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3의2.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 전자
 - 3의3. 제50조제9항을 위반하여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아니하거나 발 광장치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
 - 3의4. 제50조제11항을 위반하여 후사경이 설치되지 아니한 자전거를 운전한 운전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	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제50조(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)	제50조(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)
① ~ ⑩ (생 략)	① ~ ⑩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충돌 사
	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안
	전부령으로 정하는 후사경(後
	寫鏡)이 설치된 자전거를 운전
	<u>하여야 한다.</u>
제160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160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
	슬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	
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의2.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
	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
	아니한 운전자
<u><신 설></u>	3의3. 제50조제9항을 위반하여
	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아니하
	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
	아니한 운전자
<u><신 설></u>	3의4. 제50조제11항을 위반하여
	후사경이 설치되지 아니한 자

	전거를 운전한 운전자
4. ~ 8. (생 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